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세칙

[시행 2014.3.1.] [2016.3.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본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생 지도 활동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명확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본교의 「생활지도세칙」 제11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2장 운영 방법

제4조【자치법정의 구성】① 학생자치법정은 재판부와 행정부로 나누어 구성된다

- ② 재판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 ③ 학생자치법정 1회 당 판사 1명, 배심원 9명, 검사와 변호사는 사건 수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 ④ 행정부는 서기, 법정경위로 구성된다.
- ⑤ 학생자치법정 1회 당 서기 2명, 법정경위 2명으로 구성된다.

제5조【구성원의 선발】① 구성원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당해학년도 관찰쪽지 누적벌점이 20점을 넘은 적이 없어야 하고, 활동 중 징계를 받거나 누적벌점이 20점을 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 ② 판사 2인, 검사 6인, 변호사 6인을 선발하여 인력풀로 활용한다.
- ③ 판사, 검사, 변호사는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 지필고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 ④ 선출된 판사, 검사, 변호사는 학생생활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⑤ 서기, 법정경위는 교내 법 관련 동아리에 위탁 운영한다.
- ⑥ 배심원은 교내 품격위원을 인력풀로 활용하여 선발한다.
- ⑦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구성원의 역할】① 판사는 해당 인력풀 중에서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② 검사는 해당 인력풀 중에서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학생의 교칙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과 처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구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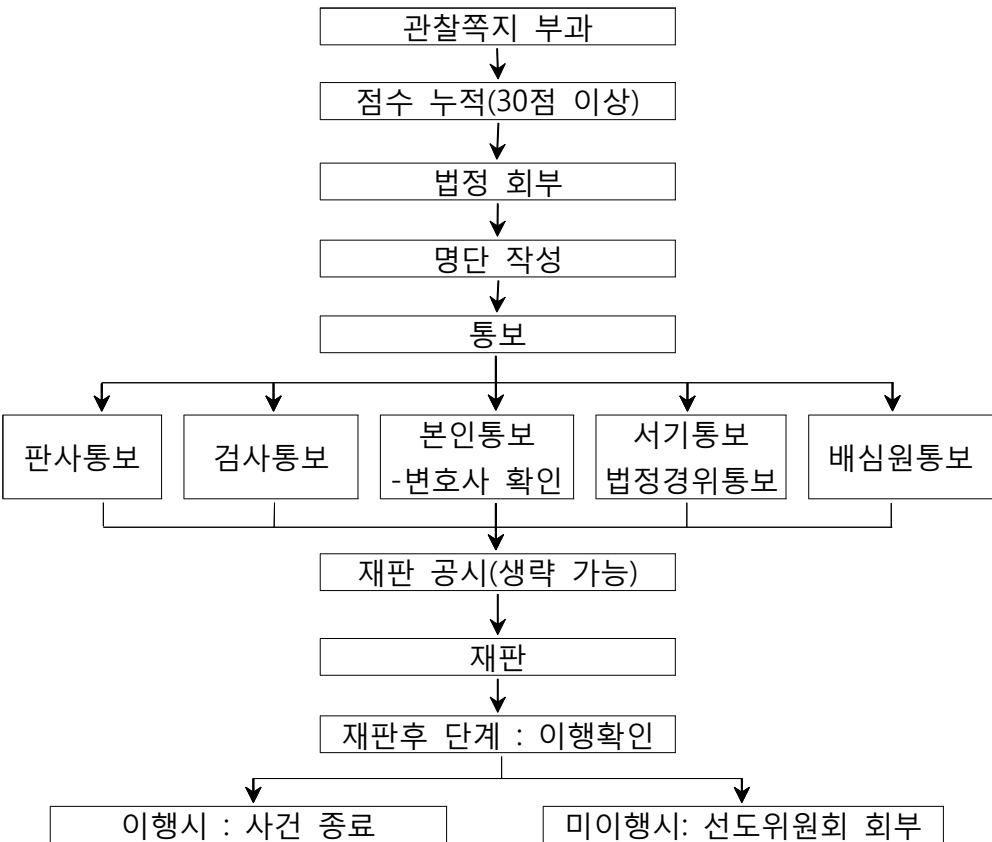
- ③ 변호사는 자치법정 회부 대상자가 변호사 인력풀에서 선정하며, 자치법정 회부 대상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 ④ 배심원은 품격위원회 중에서 9명을 선정하며, 교육처분의 유형과 검사의 구형 수준을 참고하여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 ⑤ 서기는 자치법정 운영을 위탁받은 동아리 회원 2인으로 법정에서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증인 선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 ⑥ 법정경위는 자치법정 운영을 위탁받은 동아리 회원 2인으로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제7조【운영방침】①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상시개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공식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은 관찰쪽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③ 학생자치법정은 기초위반사안만을 대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 ④ 과벌점자는 학생자치법정을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⑤ 직전 학기 자치법정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학기초에 한정하여 약식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절차】① 학생자치법정은 관찰쪽지 누적벌점 3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부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 개정 이전 관찰쪽지 누적벌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 선도위원회로 회부한다.
- ③ 학생자치법정의 회부가 결정되면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는 과벌점자에게 학생자치법정의 날짜와 장소를 공고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등에게 통보를 한다.
- ④ 통보문은 사안에 대한 설명, 장소,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⑤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 제9조【교육 처분】① 과별점자 학생에 대해서 학생자치법정 결과에 따라 교육처분을 부과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처분을 정상적으로 완수한 과별점자는 30점의 벌점 중 일부를 감면한다(벌점의 최대 10점까지 감면한다).
 - ③ 교육처분을 정상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학생은 즉시 학교 선도위원회로 회부된다.
 - ④ 교육처분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과 순례하기 (5점) (필수)
 - 2.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장실, 교무실 청소하기 (5점)
 - 3. 교장(교감)선생님과 산책하기 (5점)
 - 4. 사과문 작성하여 전달하기 (3점)
 - 5.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5분 이상의 교과 선생님 서명 받기 (5점)
 - 6. 급식시간 질서지도 30분 진행하기 (3점)
 - 7. 교육용 포스터, 표어 제작하기 (3점)
 - 8. 지정시간에 담임선생님께 모닝콜 하기 (3점)
 - ⑤ 벌점 누적 현황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교육처분 외에 적절한 교육처분 부과가 가능하다.

- 제10조【학생자치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①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에게는 임명장을 부여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의 재판부, 행정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항을 기록한다.
 - ③ 학생자치법정 우수 활동 학생에게는 학기말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통 보 문

학년 반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검사,배심원단) → 과별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별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검사의 역할

- 검사는 재판의 한 축으로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문할 때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 규칙 위반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언급하고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구형할 때는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교육처분을 선고합니다. 이때의 교육처분은 학생자치법정세칙에 의거해야 합니다.
-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구형할 때 교칙에 근거를 두고 처벌을 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법정 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통 보 문

학년 반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판사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검사,배심원단) → 과별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별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판사의 역할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합니다.

☞ 주의사항

- 판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안에서 맡은 판사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이러한 역할수행은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판사가 다른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위치인 만큼 스스로의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의 판단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인정해주도록 합니다.
-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의 진행을 총괄해야 합니다. 다만, 과별점자가 법정에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과별점자의 입장에 약간 치우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통 보 문

학년 반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검사,배심원단) → 과별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별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변호인의 역할

- 변호인은 재판의 한 축으로 피고의 규칙 위반에 대해 변론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문할 때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이 어떠한 연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이 다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은 과별점자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학생자치법정은 과별점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칙에 의해 규정된 처벌 수준에서 가능한 한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통 보 문

학년 반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검사,배심원단) → 과별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별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배심원단의 역할

- 배심원단은 과별점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회의실에서 처벌 수준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배심원단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규정 상 정해진 처벌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처벌을 얼마나 경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구형과 피고, 과별점자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이 끝나면 따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배심원단 회의를 합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배심원 중 대표가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 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회의를 통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배심원단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 법정 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통 보 문

학년 반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과별점자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알림사항

- 학생자치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교칙에 따라 추가로 처벌 받습니다.
-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정해진 처벌 수준에서 경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자신의 문제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인, 검사, 배심원단) → 과별점자 선서 → 검사 신문 → 변호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최종 의견 → 과별점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배심원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에서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월 일

배심원 대표 (서명)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판 결 문

사건번호 :

사 건 명 :

선고날짜 :

과별점자 :

변 호 인 :

판결내용 :

위와 같이 판결합니다.

배심원 대표 (인)

판사 (인)

위의 판결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과별점자 (인)

2015년 월 일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평결 및 양형 의견서

사건번호 :

과별점자 :

본 배심원들은 과별점자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본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지정시간에 담임선생님께 모닝콜 하기 (3점)
2.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장실, 교무실 청소하기 (5점)
3. 교장(교감)선생님과 산책하기 (5점)
4. 사과문 작성하여 전달하기 (3점)
5.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5분 이상의 교과 선생님 서명 받기 (5점)
6. 급식시간 질서지도 30분 진행하기 (3점)
7. 교육용 포스터, 표어 제작하기 (3점)
8. 사과 순례하기 (5점)

2015년 월 일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양형의견이 위와 같음을 확인함

재판장

서명/날인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